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10일,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의
결(원안가결)

제17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준석의원)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시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연구장려금의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u>연구장려금의 지원 등</u>) ① (생략) <신설>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u>지원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